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97. 7. 10.  
시민보건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2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6. 25.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97. 7. 1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병식 산업과장)

### 가. 제 안 이 유

가스관련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 나. 주 요 골 자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6호) 제36조,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 제41조 등이 개정되고,

○ 서울시의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 준칙(안)이 봉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마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 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8. 기 타 사 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 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9

제출일자 : 1997.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폐지이유

가스관련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3. 폐지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95. 8. 4 법률제4966호) 제36조,제43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제4967호) 제41조,제48조
- 도시가스사업법('1995. 8. 4 법률제5092호) 제45조,제54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필요성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  
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